

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. 6. 15 선고 2022가단106517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---

### 재판경과

의정부지방법원 2024. 7. 26 선고 2023나213359 판결

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. 6. 15 선고 2022가단106517 판결

### 전문

원 고 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B

피 고 C

소송대리인 D

변론종결 2023. 5. 18.

판결선고 2023. 6. 15.

### 주문

-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E 사이에 2021. 3. 7.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12,437,465원의 범위에서 취소한다.
- 피고는 원고에게 12,437,465원과 그 중 2,761,680원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3.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.

4. 소송비용 중 1/10은 원고가,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.

## 청 구 취 지

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E 사이에 2021. 3. 7.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12,437,466원의 범위에서 취소하고, 피고는 원고에게 12,437,466원과 그 중 2,761,680원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## 이 유

### 1. 인정사실

- ① 피고의 아들인 E를 상대로 하는 원고의 신청에 따라,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2. 1. 7. 위 법원 2021차전178871호로 ‘E는 원고에게 11,548,205원 및 그 중 2,761,680원에 대하여 2021. 12. 28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6.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’는 주문의 지급명령을 발하였고, 위 지급명령의 정본이 2022. 3. 19. E에게 송달되어 위 지급명령은 2022. 4. 5. 확정되었다.
- ② E의 아버지인 F(이하 ‘망인’이라 한다)는 2021. 3. 7. 사망하였고, 그 상속인으로 E 외에 망인의 부인인 피고와 아들인 D가 있었다.
- ③ 피고와 E, D는 그즈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(이하 ‘이 사건 부동산’) 등을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(이하 ‘이 사건 분할협의’라 한다)를 하였다. 이에 피고는 2022. 2. 22.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1. 3. 7.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15. 3. 25. 접수 채권최고액 120,000,000원, 채무자 망인,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G인 근저당권설정등기와 2015. 10. 26. 및 2016. 2. 4. 각 접수 채권최고액 24,000,000원, 채무자 망인, 근저당권자 같은 은행인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.

④ 피고는 2022. 4. 23. H과 I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385,000,000원에 매도하였고, 이에 2022. 8. 18. 이에 관하여 위 사람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, 2호증, 을 제1호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## 2. 판단

### 가. 사해행위의 성립

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,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(대법원 2007. 7. 26.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).

E가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점에 대하여 피고가 명백히 다투지 않아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. 그리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그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그 이후 매매된 385,000,000원 정도인 사실을 추인할 수 있고,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3건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그 채권최고액의 합계가 168,000,000원(= 120,000,000원 + 24,000,000원 + 24,000,000원)인 점을 인정할 수 있는바, E는 이 사건 분할협의로 자신의 상속분(2/7)에 해당하는 62,000,000원 $\{ (= 385,000,000원 - 168,000,000원) \times 2/7 \}$  상당을 포기하였다고 할 것이다. 그러므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원고와 같은 E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.

### 나. 반환의 방법 및 범위

피고가 이미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, 그렇다면 원물반환은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는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반환하여야 할 것이고, 그 한도는 앞서 본

바와 같이 E가 포기한 62,000,000원이다.

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,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2. 11. 14.을 기준으로, 원고의 E에 대한 위 제1항의 ① 기재 채권의 원리금은 12,437,465원(= 11,548,205원 + (2,761,680원 × 36.5% × 322일/365일), 원 미만 버림)인 점을 인정할 수 있다. 그러므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위 날을 기준으로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12,437,465원(위 한도 62,000,000원 이하이다)의 범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.

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분할협의를 12,437,465원의 범위에서 취소할 것이고, 그에 따른 가액배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2,437,465원과, 그 중 원고의 E에 대한 채권의 원금 2,761,680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다. 피고의 선의주장에 대한 판단

피고는, E의 채무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하여, 이 사건 분할협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. 그러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1)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(대법원 2008. 7. 10.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). 앞서 본 바에 의하면 E는 상속의 포기를 신고하지 않고 피고 및 D와 이 사건 분할협의를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,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선의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다.

그러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
### 3. 결론

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,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류승우

별지

## 목 록

### 1. 건물의 표시

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J에 있는 K건물 L동 제4층 M호  
[도로명주소]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N

철근콘크리트 벽식조

경사철골슬래브지붕 4층 연립주택

지하층 410.58m<sup>2</sup>

1층 413.10m<sup>2</sup>

2층 410.58m<sup>2</sup>

3층 410.58m<sup>2</sup>

4층 410.58m<sup>2</sup>

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

O

철근콘크리트 벽식조 59.93m<sup>2</sup>

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

토지의 표시 : 1.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J

대지권의 종류 : 1 소유권대지권

대지권의 비율 : 24056.4 분의 68.119

1) 이 사건에서 피고가 수익자이다.